# V 결론

본 장에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미국 장기요양보험 비교연구 결과를 토대로 ① 상품개발, ② 구조조정, ③ 세제지원의 3가지 측면에서 실손의료보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상품개발과 관련해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2009년 표준화 이후 주로 손해율 개선에 초점을 두고 상품개발이 이루어졌으나 미국의 장기요양보험 사례를 감안할 때 향후에는 재무건전성과 상품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상품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보험료 인상과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평판이 나빠져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현재는 상품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금과 같은 추세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의 반복으로 평판이 안 좋아지면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재무건전성과 함께 상품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는 상품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재무건전성과 상품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상품개발 노력이 있었는데,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장기요양뿐만 아니라 사망보장 등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결합상품이다. 생명보험의 특약으로 장기요양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 상품이나 생애단계별 보장 상품 등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상품수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이 장기요양보험금의 지급한도가 됨으로써 재무건전성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보험금과 보험료를 낮춘 저가형 상품이다. 보험금 지급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상품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건강위험 감소를 유도하는 상품으로, 장기요양보험과 웰니스 프로그램의 결합이나 세제적격 장기요양보험의 보장 대상을 주택 개조나 비전문적인 간병인 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해당된다.

이들 3가지 유형 가운데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두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도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세 번

째 유형 관련 상품개발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John Hancock Financial 사례를 참고해 볼 때, 건강위험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의 재무건전성과 상품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단독형 실손의료보험과 헬스케어 서비스의 결합상품 개발을 생각해볼 수 있다.[32] John Hancock Financial은 장기요양보험상품의 손해율 관리를 위해 직접적인 요율 조정 대신 손해율의 근본적 요인인 건강 위험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도입했다.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료 조정보다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건강 위험을 낮춤으로써 손해율을 관리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건강위험이 낮아지면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어 재무건전성이 제고되고, 보험계약자 측면에서는 보험료가 감소되어 상품수용성이 증가한다. John Hancock Financial의 경우를 참고해서 국내 보험회사도 실손의료보험 고객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본고에서는 회사분할제도,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채권자 보호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제도와 미국 제도를 비교했다. 미국의 회사분할법제에는 우리나라 회사분할법제에 있는 채권자 이의절차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채권자 이의절차 없이 규제당국의 승인만으로 기업분할을 허용하는 미국 일부 주의 보험산업 특화 회사분할제도 도입 사례만을 가지고 국내 보험업법에 채권자 이의절차를 제한하는 회사분할제도 도입을 주장하기에는 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보험산업 특화 회사분할제도에서 채권자 이의절차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매우 많은 채권자(보험계약자)가 존재하는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라기보다는 미국의 회사분할법제가 가진 일반적인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회사분할법제에서 채권자의 이의제출권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의 논거를 찾기 어렵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대안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회사분할법제를 가지고 있는 독일과 일본 사례를 참고해 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독일 조직재편법의 경우 기존 채무이행에 관한 위험수준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가 합병 시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일본 회사법에서도 합병·분할 등의 경우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으면 별다른 채권자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다.[33] 독일과 일

32)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위기는 주로 질병통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상품 내 헬스케어 서비스는 질병통원 관련 의료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개발될 필요가 있음

33) 독일과 일본 사례는 노혁준(2013)을 참고했음

본 사례를 참고하여 기존 채무이행 관련 위험이 증가하지 않거나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이의절차를 제한하는 규정을 국내 회사분할제도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회사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으나 ① 매우 많은 채권자(보험계약자)가 존재하는 보험산업의 특수성과 ② 보험회사의 채무위험 평가에 있어서의 금융당국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보험산업 특화 회사분할제도를 보험업법에 도입하여 규제당국의 승인하에 채권자 이의절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시장 기반도 중요하다. 일부 사업을 처분하려고 해도 이를 받아줄 주체가 없다면 제도적으로는 구조조정이 허용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구조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구조조정 제도 정비와 함께 시장 기반 구축이 필요한데, 2가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임준·이승주(2022)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런오프 전문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공적 영역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시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험산업 내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실손의료보험시장에서 신규 판매를 중단한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관리를 위한 조인트벤처(Join venture)를 설립하는 것이다. 개별 보험회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조인트벤처를 만들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다.[34] 조인트벤처 설립 방법으로 2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먼저 조인트벤처를 설립한 후 참여 보험회사들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조인트벤처로 이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험회사들이 먼저 회사분할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사업을 분리한 후 분할신설회사들을 합병해서 조인트벤처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가 주로 근로기간 동안의 의료비 지출과 보험료 납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 이후이기 때문에 퇴직 후의 의료비 지출이나 보험료 납부를 지원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건강저축계좌처럼 근로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적립해놓았다가 퇴직 후 의료비 지출이나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저축계좌 도입을 대안의 하나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

34) Brandenburger and Nalebuff(1996)는 경쟁(Competition)과 협력(Cooperation)을 결합한 '코피티션(Co-opetition)'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적 개념을 제안했는데, 이는 경쟁자들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함

본 연구가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장기 발전방향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언급하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상품개발과 관련해서 생애단계별 보장 상품은 향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에는 정기보험으로 사망을 보장하고 퇴직 후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상품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상품 개념을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구조조정 시장기반 구축의 한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에 의한 조인트벤처 설립을 제안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쟁법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보험회사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조인트벤처는 경쟁자 간 협력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조인트벤처가 보험산업 내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본고에서는 세제지원과 관련해서 건강저축계좌의 도입 검토를 제안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책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건강저축계좌의 도입 대상 범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 사례에서처럼 자기부담비율이 높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만 허용할 경우 재무건전성 등 여러 측면에서 이점이 있기는 하나 가입 대상을 일부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 및 의료에 특화된 저축계좌를 도입하는 방안과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처럼 노후에 여러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저축계좌의 세제 혜택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과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